라이언장학금(생활비지원) 시행 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장학금지급규정 제6조 2항의 위임에 따라 가계곤란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으로 라이언장학금(생활비 지원)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정하는데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ERICA캠퍼스 라이언장학에 관하여 본 시행 내규를 따르며,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"장학금 지급 규정"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. (본조신설 2023.07.19)

제2장 장학 대상 및 선발 원칙

제3조(장학 대상) 라이언장학 대상은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. (개정 2023.07.19)

- ① 본교 학부에 재학 중이며, **직적학기 장학평점 2.0이상인자** (개정 2023.07.19)
- ②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판정자 (개정 2023.07.19)
- ③ 휴학자, 학업연장, 졸업유보, 수료자, **선택형 4+1 대상자** 제외 (개정 2023.07.19)
- ④ 무등록복학자의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**소득구간** 판정결과가 조건에 부합한 자 (개정 2023.07.19)

제4조(장학생 선발) 라이언장학금은 별도로 협의된 예산범위 내에서 제3조에 해당되는 장학대 상자를 매학기 등록 및 학적변동 최종 확정이후 학생지원팀에서 선발한다.

제3장 장학금 지급 및 수혜 제한

제5조(장학금 지급 및 금액)

- ① 학생들에게 고지서 감면 형식이 아닌 직접 지급 형식(계좌이체)으로 지급한다.
- ② 생활비지원 장학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. (개정 2023.07.19)
- ③ 1학기는 3월~8월, 2학기는 9월~차년도 2월까지 학생 본인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선발 취소)

- ① 장학금지급규정 제 12조 2항에 해당이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② 기 선발 처리된 장학생이 중도휴학일 경우 해당월부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.

제7조(준용)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칙, 장학금지급규정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 다. (삭제 2023.07.19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